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오문섭의원 외 18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문섭 의원)

가. 제안이유

- 건전한 언론 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언론사를 우수언론사로 선정하여 포상하고,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 또한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언론사 중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결정 횟수에 따른 제한기준을 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복지급 언론사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항)
- 보조금 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2항제3호)
-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 관련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1항제5호)
- 우수언론사 선정 및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사업자가 중복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등 제한 규정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립하고 공정하게 운영·활성화하기 위한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역언론 지원 조례」 제9조 관련 조항은, 언론 포상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등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 발의 - 오문섭 의원

○ 발의된 조례안의 조문이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구체화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함.

제4조제5항제3호 중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신문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를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 로 수정하고,

제9조(우수언론 포상) 관련 조항은 삭제 수정.

※ 수정대비표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동 의 안
제4조(출입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언론사 또는 출입기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출입등록)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3.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신문 사업자 또는 인터넷신문사업자가 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는 경우 (이 경우 최초로 등록한 1개 언론사에 대한 출입등록만 유지한다)	3. <u>2개 이상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또는 대표자 또는 대표이사 중 동일인이 있는 경우(이 경우 최초로 등록된 1개 언론사에 대한 출입등록만 유지한다)</u>
제9조(우수언론 포상) ① 시장은 <u>건전한 언론활동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u> 언론사를 우수언론사로 선정하고, 「화성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포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u><삭 제></u>

화성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오문섭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오문섭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과 경영진단 대상으로 선정된 출자·출연기관의 진단 결과를 화성시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사항을 의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화성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공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경영진단 실시결과 공시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출자·출연기관의 홈페이지 공시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침수 방지지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박진섭의원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박진섭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풍수해로부터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지원하고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장 및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4조)
-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설치규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예산편성, 지원기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10조)
-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침수 방z시설 설치 조레 제정을 통하여 최근 급변하는 기후상황을 고려한 침수방z시설 설치를 적극 독려하여 화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전에 예방·대비하고자 하는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안전정책과 신광호)

가. 제안이유

- 2006. 11. 30. 제정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및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 맞지 않는 조례의 명칭과 인용 조항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명 및 관련 조문 정비(안 제명, 안 제1조 ~ 제8조)
- 「건축법」 개정으로 인용 조항이 변경되어 현행법에 맞게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호)반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상위법령 개정 등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예산재정과 이택구)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 부위원장을 신설구성하여 회의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위원장 등의 직무(안 제3조 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됨이 없고 화성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구성을 정비·보완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고문 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의회법무과 김선일)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주요 대도시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고문 변호사 자문 수당 기본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기본 지급액 상향(월20만원 → 30만원) 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화성시 고문변호사 자문 수당을 정비하여 행정의 향상성을 기대할 수 있는 등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김영수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영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일괄 전환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위원의 선정 및 구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총회,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 정수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 위원 선정방식 및 기본교육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구성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간사 또는 사무국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감사 및 분과위원회 구성원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제13조)
- 주민총회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제16조)
- 심화교육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
-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제21조)
- 재원 및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 (안 제22조, 제2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해촉 등 관련규정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자치회가 건전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실비 및 수당지급 사항은 지급대상 기준을 명확히하는 등 본 안건에 대한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 수정동의 발의 - 김영수 의원

- 발의된 조례안의 조문이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재정비와 대상의 범위 기준을 확립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9조제6항 중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수정하고,

제11조제2항 및 제4항 중

“운영보조자 등”을

“운영보조자”로 수정하고자 하며,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관련 조항은,
현행과 같게 수정.

※ 수정대비표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화성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동 의 안
제9조(구성관리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구성관리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한 구성관리위원회 위원에게는 「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 ----- ----- 예산의 범위 ----- ----- ----- -----.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생 략)	제11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장, 운영보조자 등 을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② ----- ----- 운영보조자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 사무장 및 운영보조자 등 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해당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징수한 수강료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 ----- 운영보조자 ----- ----- -----.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제2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읍·면·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
 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
 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
 다. 이 경우 재정적 지원은 전년
 도 주민세(균등분)의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한다.

② ~ ⑥ (생략)

----- 해당 -----

 ---. -----
 --- 경우 ----- 부과액 -----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화성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김종복 외 6인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김종복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와 자격요건 및 위촉기간 등을 개정하여 결산검사 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위원 정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 위원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위촉 기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관련 조항 개정으로 인하여 화성시 결산검사위원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 발생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의 해촉 사항을 더함으로써 더욱 명확한 운영이 가능할것으로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2023년도 수시(2차)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 6. 29. 화성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23. 6. 30.

다. 상 정 일 자 : 제22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3. 7. 13.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재산관리과 김향점)

가. 제안이유

○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위한 문화·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창의적인 인재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고자 함.

○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 동부·동탄권역 내 노인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동탄2(주65)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 장지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일대에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재산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관부서
	구분	소 재 지	수량 (면적)				
계	토지 건물 기타		4,841.1 8,446 -	6,673,639 39,820,000 -			
1	토지 건물 기타	오산동 578번지	- 3,796 -	- 18,094,000 -	- 2025년 -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창년청소년 정책과
2	토지 건물 기타	동탄1신도시 농업관련용지 AG1-1-3	3,281 4,650 -	4,701,673 21,726,000 -	2023년 2025년 -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중장년 노인복지과
3	토지 건물 기타	장지동 957-1(주65)	1,560.1 - -	1,971,966 - -	2023년 - -	동탄2(주6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교통지도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정자)

○ (가칭)동탄2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 본 계획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이 부재한 동탄2신도시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청소년들의 여가·놀이·문화 활동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마련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 됨.

○ 화성시 시니어플러스센터 건립

- 본 계획안은 현재 화성시 노인회관 및 시니어클럽이 서부권에 위치에 있어 동부·동탄권에 복합시설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어르신들의 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 됨.

○ 동탄2(주65)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본 계획안은 장지동 이주자택지 및 상업시설 입주에 따른 지평식 1층 노외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 및 상가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영주차장 인근 도로변 불법주정차 해소 등 교통혼잡을 완화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절한 계획안이라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